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편 드 명	BNK법인MMF1호(국공채)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 운용전문인력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효 력 발 생 일	2023년 04월 01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u>이승건</u>	- 2023.03.14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u>김재욱</u>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u>이승건</u>	- 2023.03.14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u>김재욱</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3.04.01: 운용전문인력 변경,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u>이승건</u>	- 2023.03.14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u>김재욱</u>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자산의 평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가. (생략) 나. 집합투자자산의 평가방법 <u><변경 전></u>	가.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자산의 평가방법 <u><변경 후></u>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이익배분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나. 과세 (생략)	가. 이익배분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 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나. 과세 (현행과 동일)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가. 요약재무정보 - <항목 추가>	가. 요약재무정보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생략) (2) 주요업무 1) (생략)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생략)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이하 생략) 나. ~ 라. (생략)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현행과 동일) (2) 주요업무 1) (현행과 동일)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등 (이하 현행과 동일) 나 ~ 라. (현행과 동일)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u>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생략) 나. 수시공시 (1) (생략)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1. ~ 7. (<u>생략</u>)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u>생략</u>) (3) ~ (4) (<u>생략</u>)	가. (<u>현행과 동일</u>) 나. 수시공시 (1) (<u>현행과 동일</u>)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1. ~ 7. (<u>현행과 동일</u>)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u>현행과 동일</u>) (3) ~ (4) (<u>현행과 동일</u>)

<변경 전>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재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

※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한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자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2) 장부가격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시행령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어 그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4)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변경 후>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다음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30%를 초과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 안정적 자산

안정적 자산		투자비율
①	현금	30%초과
②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③	양도성 예금증서	
④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⑤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⑥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가. 상기 본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되, ①~⑦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에는 시가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며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장부가격과 시가의 괴리를 확대 등 선환매유인 발생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는 다음(선환매유인 관리조치)에 따른다.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3) 집합투자업자는 위 (1)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 (6) 위 (5)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가평가 :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

※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한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자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2) 장부가격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시행령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어 그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4)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끝>.